

5. 個別土地價格合同調查指針廢紙訓領

國務總理訓領 第336號 1996. 10. 7

주요 골자

“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(국무총리훈령 제281호, '93. 7. 22)”의 폐지

폐지 이유

개별공시지가의 조사·결정에 근거가 되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중 필요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('95. 12. 29), 동법 시행령('96. 6. 29) 및 동법시행규칙('96. 8. 2) 개정시 충실히 반영하였으므로 동 지침은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